

2021 제3호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맞춤형 법제정보

- 멕시코 반부패 관련 법제 현황
- 칠레 반부패 관련 법제 현황
- 페루 반부패 관련 법제 현황

외국법제동향

- 이탈리아 COVID-19 관련 한시적 해고제한법의 주요 내용
-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안)」의 제계 및 주요 내용
- 중국 「온라인거래 감독관리방법」의 입법 배경 및 주요 내용
- 미국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동향
- 프랑스 보조생식 관련 「생명윤리법」의 입법동향

2021 제3호

최신외국법제정보

Issue Brief on Foreign Laws

신청기관: 국민권익위원회

페루 반부패 관련 법제 현황

김연수 |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

I . 들어가며

2020년 7월 28일, 페루 독립기념일을 기념하며 대통령 Martin Vizcarra는 정부가 과거 수년간 복잡한 위기를 겪었어야 했으며, 그 중 하나는 부패에 관한 위기라고 하였다. 그는 또한 부패에 직면하여 싸울 것을 강조하였으며 기관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법적·정치적 개혁이 이번 정부의 주 목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근 몇 년간의 부패에 맞선 싸움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뇌물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형사적 책임의 도입이었다. 전통적으로 뇌물에 대하여 직접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 아닌 기업은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았으나, 2016년 페루 국회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범죄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법인책임법」(법률 제30424/2016호)을 통과¹시켰고, 2017년 이 법을 국내의 공무원의 뇌물범죄, 돈세탁, 그리고 테러금융 등의 범죄에 대한 책임까지 영역을 넓혀 2018년 시행에 들어갔다.

페루 정부는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개의 방법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는데, 뇌물범죄를 인정한 기관들과 계약을 맺었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를 저지른 회사에 의해 정부에 대해 민사 배상을 지불할 것을 보장하게 한 법이며, 뇌물범죄에 대하여는 페루 정부와의 계약에서의 제외가 포함된다. 부패에 맞서 싸우기 위한 페루 정부의 또 다른 진전은 2018년 기업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적 부패의 범죄화이다.

Odebrecht 사례² 외에도, 건설 클럽 사례³로, 인프라 공사(입찰 조작)를 수주하기 위한 카르텔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외 여러 건설회사들이 관련되어 있었던 사건이 존재한다. 비록 이 사건은 독

1 ley n.30424 (ley de responsabilidad administrativa de las personas jurídicas)

2 오데브레시 사건, https://elpais.com/internacional/2020/02/14/actualidad/1581646001_515057.html 참조 (최종방문일: 2021년 7월 14일)

3 «Club de la construcción: el presunto cartel de firmas peruanas y extranjeras». Semana Económica (Lima). 2017.

점금지소송으로 시작되었지만, 회사들이 카르텔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공무원들에 게 뇌물을 지불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건설사 대표, 교통부 전직 공무원, 금품수 수 중개인에 대한 사전조사가 시작되었으며, 건설사 역시 법률대리인이 저지른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민사책임이 있는 제3자’로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건설사에 대하여는 수사 대상 범죄(Law No.30424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폐업,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부대조치를 받을 수 있었다. 판사는 2019년 11월 건설회사들의 합병을 명령했고, 일부 건설회사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끝에 2020년 2월 이를 확정했다.

페루 「법인책임법」(법률 제30424호)은 법인은 돈세탁, 테러금융 등을 포함한 뇌물범죄에 대하여 그의 이름으로 혹은 주주, 이사, 사실상 혹은 법률상 관리자, 법적 대표자, 법정대리인, 자회사를 통해 직간접적 이익을 얻는 경우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페루는 또한 2018년 7월 OECD 뇌물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의 회원국이 된 바, 그에 따라 페루는 OECD의 뇌물죄 제재기준을 준수하며 2019년 3월 OECD 국제사업거래 뇌물수수 실무그룹 평가 1단계(Working Group, ‘작업그룹’)를 승인했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페루의 반부패법 체계를 검토하여 본다.

III. 페루의 반부패법 체계

1. 관련 법률 제정 현황

- 「형법」(Código Penal) – 제393조부터 제398조까지(공무원 부패에 관한 규정)
- 「형사소송법」(Código Procesal Penal)
- 「법인책임법」(Ley Que Regula La Responsabilidad Administrativa De Las Personas Jurídicas Por El Delito De Cohecho Activo Transnacional, 법률 제30424호) – 반부패 법으로 「형법」 제397-A조의 법인의 국제뇌물범죄에 대한 행정책임을 규율하는 법
- 「정부 로비법」(Ley Que Regula La Gestión De Intereses En La Administración Pública, 법률 제28024호, 2003)
- 「공무원 윤리법」(Ley Del Código De Ética De La Función Pública, 법률 제27815호)
- 「공무원 조직법」(Ley De Servicio Civil, 법률 제30057호)

- 「공무원 이해충돌 방지법」(Ley Que Establece Prohibiciones E Incompatibilidades De Funcionarios Y Servidores Públicos, Así Como De Las Personas Que Presten Servicios Al Estado Bajo Cualquier Modalidad Contractual, 법률 제27588호)
- 「부패관련자금의 국고 신속환수법」(Ley Que Asegura El Pago Inmediato De La Reparación Civil A Favor Del Estado Peruano En Casos De Corrupción Y Delitos Conexos, 법률 제30737호)
- 「행정부법」 제119-2012-PCM호(Decreto Supremo No. 119-2012-PCM) – 국가 반부패 플랜에 관한 법률
- 「행정부법」 제046-2013-PCM호(Decreto Supremo No. 046-2013-PCM) – 행정부 반부패 전략에 관한 법률
- 「공공정보 투명성 및 접근보장법」(법률 제27806호, ley no. 27806, 2002)
- 「내부고발자보호법」(Ley De Protección Al Denunciante En El Ámbito Administrativo Y De Colaboración Eficaz En El Ámbito Penal, 법률 제29542호, 2010)
- 「공직자 소득과 재산 신고법」(Ley Que Regula La Publicación De La Declaración Jurada De Ingresos Y De Bienes Y Rentas De Los Funcionarios Y Servidores Públicos Del Estado, 법률 제27482호)
- 「공무원의 친인척 공직 제한법」(Establecen Prohibición De Ejercer La Facultad De Nombramiento Y Contratación De Personal En El Sector Público, En Casos De Parentesco, 법률 제26771호, 일명 친인척 금지법)

2. 공무원에 대한 뇌물

(1) 정의

「형법」에서는 수동적 뇌물(Cohecho Pasivo, Passive Bribery)과 능동적 뇌물(Cohecho Activo, Active Bribery)을 구분하는데, 수동적 뇌물이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거나 하여야 할 공무를 수행하지 않음을 약속함으로서 기부, 요구, 약속 혹은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이고(제393조), 능동적 뇌물이란 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목적으로 기부, 약속,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다(제397조).

「공무원 윤리법」(법률 제27815호)은 공무원이 본인이나 타인을 위하여 부적절한 이익이나 혜택을 얻는 것을 금지한다(제8조). 그리고 본인의 직위나 업무에 기초하여 영향력의 부적절하고 이기적인 행사(Tráfico de Influencias)를 금하고 있다(「형법」 제400조).

「형법」 제425조는 공무원의 개념정의(Artículo 425. Funcionario o Servidor Público)를 하고 있는데, 동 조문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직을 수행하거나, 공직에 선임되거나 투표 등의 이유로 선출되었거나, 정부기관 혹은 국유기업과 계약을 맺은 관계에 있거나, 법원이 선임한 (사적 재산이더라도) 재산관리인이거나, 군경이거나 국가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혹은 폐루 헌법에 의해 공무원으로 여겨지는 자를 말한다.

「공무원 조직법」(Ley del Servicio Civil, Ley Nº 30057)은 제3조 a)에 “공무원은 국가조직에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대리인이나 공무대리인”으로 정의하여 「형법」 제425조의 공무원 개념과 해석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부패범죄와 관련해서는 「형법」의 정의규정이 우선한다.

(2) 제재

뇌물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주체에 따라 그 제재의 양상이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뇌물 관련 범죄의 각 주체별 제재

기업 (「법인책임법」 제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로 인하여 얻거나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적계는 2배에서 많개는 6배에 이르는 금액의 벌금 자격정지: ① 기업활동의 일시적(최대 2년) 중지 ② 범죄를 저지르거나 숨기기 위하여 수행한 활동과 동일한 종류나 성격을 가진 장래 활동의 일시적(최대 5년) 혹은 절대적 금지 ③ 정부와의 계약의 절대적 금지 자격, 인가, 권리, 혹은 다른 행정적 권한의 취소 기업 부지의 일시적(최대 5년) 혹은 절대적 폐쇄 기업의 해산 등
사적 개인 (「법인책임법」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지를 뇌물범죄의 종류에 따라 최대 8년에 이르는 징역(Imprisonment) 부자적인 처벌로서 관련 뇌물범죄가 이뤄진 분야에 대한 전문적 혹은 사회적 활동의 금지 공무원으로서의 선출 또는 선정의 일시적(최대 20년) 혹은 절대적 금지 금전적 벌금
공무원 (「형법」 제39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지를 범죄의 종류에 따라 최대 15년에 이르는 징역 면직이나 공직에의 선출 혹은 임명의 일시적(최대 20년) 정지 금전적 벌금

(3) 정치적 기부행위(Political Contributions)

정당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매년 약 PEN 237,000 혹은 USD 68,000⁴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당법」(법률 제28094/2003호)은 정당이 정부기관이나 국유 기업, 혹은 교육이나 조사를 위한 기부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 정당이나 외국 정부기관으로부터 기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정당법」 제30조). 또한 정당 후보는 개인적으로 기부받는 것이 금지되며, 오로지 정당의 이름으로만 기부를 받을 수 있다(제31조).

(4) 향응비용의 제한(Gifts, Gratuities, Travel, Meals and Entertainment)

「형법」에 의하면, 비록 일상적인 활동에 대한 필수적이고 소액인 비용일지라도 공무원에 대한 금전 지급, 선물 혹은 향응은 관련된 공적기관의 공식적 사전요구나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 뇌물로 간주된다(제401-A조). 「형법」 제393조 내지 제401조B에 의하면 선물이나 향응은 상황과 제공된 시간에 따라 뇌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물과 향응을 제공하는 사유(예: 생일)와 그 제공된 선물 혹은 향응의 값어치의 명백한 불균형은 ‘은폐된 뇌물(Concealed Bribery)’로서 효과적인 뇌물의 제공방법으로 여겨진다. 재판부는 추후의 공무원의 행동을 ‘은폐된 뇌물’인지를 판단하는 요소로 고려하는 바, 이는 그 선물이나 향응을 제공한 자에게 그 제공 이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지⁵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3. 사인간 뇌물

사인간의 뇌물에 대해서는 「형법」이나 「법인책임법」 등 어느 곳에도 규정이 없다. 사적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의 사내규정에 따른 사인간 뇌물에 대한 규제가 있을 뿐이다. 단, 「형법」 제425조 제3항에는 공기업 관리직과 경영직의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뇌물죄가 적용된다. 따라서 민간인의 경우 공기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사인간 뇌물이나 혜택 등에 관해서는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외국공무원의 부패

(1) 관련 법 현황

- UN 반부패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형법」(Codigo Penal) 제393-A조, 제397-A조
- 「법인책임법」(법률 제30424/2016호) – 반부패법

(2) 정의

「형법」은 외국의 공무원의 부패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도 능동적·수동적 뇌물을 구분한다(관련하여 공무원에 대한 뇌물 정의 부분 2.(1)참조).

「형법」에는 외국공무원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rt.1(4)(a)에 의하면, 외국의 공무원이란 외국의 입법, 행정, 사법 분야에 재직 중인 자로, 선출 혹은 임명된 자 모두를 말한다. 「형법」 제397-A조(능동적 국제뇌물 Cohecho Activo Transnacional)는

⁵ 계약을 낙찰하거나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 등

‘외국의 공무원 또는 국제기구의 직원(Funcionario O Servidor Público De Otro Estado O Funcionario De Organismo Internacional Público)’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형법」 제425조에서 정의하는 공무원규정에 따라 외국공무원의 범위를 파악하면 되고, 이러한 경우에 외국의 공적기관이나 기업에서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

(3) 제재

외국공무원에 대한 부패범죄는 최소 5년에서 최대 8년의 수감이 가능하다. 만약 범죄가 법인을 대신하여 저질러지고 그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익을 위해 저질러졌다면, 해당 법인은 형사적 책임을 지게되고, 형사법원은 공무원에 대한 뇌물에 관한 2.(2)의 제재를 적용하게 된다.

(4) 향응비용의 제한

공무원에 대한 뇌물부분인 2.(4)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5. 급행료(Facilitation Payments)

급행료는 공무원에게 일을 빨리 처리하여 달라는 의미에서 비공식적으로 지불하는 돈으로, 일반적으로 폐루 반부패법은 뇌물을 받거나(수동적 뇌물), 뇌물을 주는(능동적 뇌물) 것 모두를 처벌하므로 이러한 급행료의 경우 뇌물에 해당하며 예외적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6. 기타 부패관행 (Other Corruption Practices) 및 제재

(1) 「형법」은 뇌물 외에도 이하와 같은 부패관행을 규제한다.

- 권위의 남용(Tráfico de Influencias): 공무원이 그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적 이익을 위해 지위를 사용하는 것(「형법」 제400조)
- 부당이익(Enriquecimiento Ilícito): 공무원이 그의 지위를 남용하여 법적 관세를 초과하여 부적절한 지불이나 기여, 보수를 요구하는 것(「형법」 제401조)
- 단순 기중담합(Simple and Aggravated Collusion):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국가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의 재화, 작업, 용역의 계약 또는 획득에 관여하거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국가나 공공기관을 사취하도록 협의하는 것
- 돈세탁(Money Laundering):
 - 압류 또는 몰수 방지를 목적으로 불법출처가 알려져 있거나 추정될 수 있는 금품, 효과 또는 이익의 전환 혹은 이전
 - 불법적인 원천과 자산 혹은 자원의 사용을 범죄행위로부터 은폐하고 그것들을 금융시스템에 도입하는 것

(2) 상업활동 참여에 대한 규제

2001년 제정된 「공무원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27588/2001호)은 공무원, 이사, 기업가, 고위공무원, 자문회의 위원, 행정법원, 위원회 및 국가의 공적 기능이나 위원회를 수행하는 기타 대학 단체 활동의 허용 및 금지사항을 규정한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 소유의 회사 이사 또는 정부 고문, 특정 위원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그 직무나 서비스의 특성상 특권 또는 관련 정보에 접근했거나 의사결정에 있어 의견을 결정한 경우, 공무원의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금지된다(제2조).

- 어떤 형태로든 민간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유상 대표 수락
- 이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민간기업, 자회사 또는 개인과 경제적 연계를 가질 수 있는 기업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 해당 기관과 민사 또는 상업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변호사, 고문, 후원자, 전문가 또는 중재자로서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부서에 계류되어 있는 과정에 개입하는 것
- 이러한 장애는 사임, 종료 또는 해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결의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중단 또는 완료 후 최대 1년까지 연장됨

7.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1) 개관

「법인책임법」(법률 제30424호)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17조-19조). 법인은 뇌물범죄행위 이전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Modelo de Prevención)을 자발적으로 시행한 경우 뇌물범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① 범죄 실행 이후부터 구술심리 시작 전까지 위 프로그램을 시행한 경우, ② 위 프로그램의 최소한의 요소를 부분적이거나마 실행한 것으로 입증한 경우 부과될 벌금의 감형요소로 고려된다(제12조). 다만, 페루 「형법」에서는 법인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두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자체로 범죄로 보거나 처벌하지는 않는다.

「법인책임법」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검찰은 자본시장감독(Superintendence of Capital Markets)에게 해당 기업이 시행하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적절한지에 대한 리포트를 요청하고, 위 프로그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

(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요소

「법인책임법」(법률 제30424호)은 뇌물 혐의를 받는 경우 무혐의로 간주되기 위하여 갖춰야 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요소를 언급하는 바, 이는 아래와 같다(제17조 제2항).

- 법인 혹은 그와 동등한 지위의 최대관리기관에 의한 Compliance Officer의 임명
- 뇌물 혐의를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의 인지, 평가, 경감 방법
- 내부 불만처리과정의 시행(Whistle Blowing, Hotline)
- 회사의 조직내부에서 예방모델의 전파
- 예방모델과 관련한 주기적인 트레이닝 세션의 진행
- 예방모델의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여기서 필수적인 부분은 임명된 Compliance Officer는 그의 기능을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제17조).

8. 감형거래(Plea Agreement)

「형사소송법」은 제472조-제481-A조에 감형거래(Proceso Por Colaboración Eficaz)에 대해 세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472조에 의하면, 검찰은 공무원의 뇌물과 관련된 범죄혐의가 있는 여부가 문제된 자에게 효과적인 협력을 요구하거나 협력을 요청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원칙적으로 개인들을 위하여 의도되었으나 「부패관련자금의 국고 신속환수법」(법률 제30737호)을 통해 그 범위가 법인까지 확장되었다.

법인이 효과적인 협력제도(Colaboración Eficaz, Effective Collaboration)에 접근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제474조, 제475조).

- 자발적으로 범죄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 검찰에 스스로 출두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의지를 보일 것
- 자유롭고 명확히 죄를 인정하고 개입하였거나 전가된 사실을 모순반박하지 않을 것. 용인되지 않은 사실들은 효과적인 협력과정의 부분이 될 수 없으며 관련된 형사절차에 의한 결의안에 따르게 될 것임

이러한 정보는 다른 면들 중에서도 범죄의 연속성, 영속성을 방지하거나 범죄의 실행의 규모나 결과를 상당한 정도로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하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를 예방하거나 중화하여야 한다(제472조). 효과적인 협력제도를 요청하는 주된 목적은 신청자를 위한 것으로, 신청인과 검찰이 체결한 혜택 및 협력에 관한 협약에 포함될 보상의 대가로 검찰이 사실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위 합의서는 사법부에 제출되어 적법성 통제와 검토를 받게 되며, 법적으로 위반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만 승인을 거쳐 전권을 획득하게 된다.

위 효과적 협력제도에 지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제475조).

- 적용 가능한 상호보완적 결과로부터의 면제
- 설정된 최소한도의 기준 이하로의 하향감소
- 상호보완적 결과의 감형
- 법률에 정립된 다른 혜택들
- 「법인책임법」(법률 제30737호)의 적용의 유예, 법적 단체의 재분류를 받을 수도 있음
- 정부와의 계약에서의 제외의 예외

효과적인 협력제도를 발동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상기 이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제공된 정보가 유용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적절히 보강된 경우, 또한 협력자가 협력과 관련된 계약에 따른 의무와 약속에 충실했을 경우에만 위 이익의 보상이 가능하다(제479조).

9. 국제적 협력

페루는 OECD Anti-bribery Convention,⁶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he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의 서명국이다. 또한 OECD Anti-Corruption Initiative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의 회원국이다. 페루는 2019년 3월 OECD 국제사업거래 뇌물수수 실무그룹(OECD 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평가 1단계('작업그룹')를 승인한 바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반부패·뇌물금지 관련 법안은 없고, 그에 따른 실무그룹의 평가 및 권고안에 따르면 「형법」 제397-A조 및 「법인책임법」(법률 제30424호)은 대체적으로 협약의 기준에 충족되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몇 부분 존재하므로⁷ 이는 2단계 진행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어서 중장기적으로 일부 수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⁶ <https://www.oecd.org/corruption/peru-to-join-two-major-oecd-conventions-anti-bribery-convention-and-multilateral-convention-on-mutual-administrative-assistance-in-tax-matters.htm> 참조 (최종방문일: 2021년 7월 14일)

⁷ <https://www.oecd.org/corruption/anti-bribery/OECD-Phase-1-Report-Peru-ENG.pdf> (최종방문일: 2021년 7월 14일)

10. 최근의 부패범죄

페루의 수도 리마를 관통하는 Panamerica 고속도로 구간 중 Ruta de Lima 의 7개 톨게이트를 양허기업인 Vinci Highways, Brookfield사가 각 운영 중 위 도로의 양허기간 관련하여 이전 리마시장이었던 Susana Villarán에게 10백만 불의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위 시장이 구속되고 현 Muñoz시장은 이 두 사업의 양허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Brookfield사는 El Comercio(신문)에 전면광고를 게재하며 적극적 반박활동을 게시하고, Vinci Highways사는 현재 유효한 계약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Vizcarra대통령은 두 양허사업 취소가능성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히고(Gestión, 5.17), 인프라진흥협회는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이루어진 시의회 특별위원회(2019.5.20.)에서는 두 양허기업과 재협상 추진을 권고하였으나 리마시는 두 양허사업의 전면 취소를 검토 중이다.⁸

III. 나가며

일반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부패는 구조화,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페루 부패의 특징도 각종 대형 부패스캔들과 더불어, 국민이 이러한 부패가 조직적 범죄의 형태로 만연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부패(소위 Coima, Petty Bribery) 없이는 하고자 하는 일의 진행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작은 뇌물은 부패라고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부패문화가 일상생활에 만연되어 있다는 점에 있다. 페루의 반부패정책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국민이 부패한 행위를 처벌하고 방지하는 법적 티대를 제공해야 할 사법부를 가장 부패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⁹

페루는 민주적 기반들인 입법부, 사법부의 독립, 자유로운 언론 및 정기적 선거를 통한 대통령선거 등이 갖춰진 국가였으나 앞서 언급한 일련의 스캔들로 인하여 그러한 기제들이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이 드러났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불러왔으며, 그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OECD 정회원이 되려는 정부의 관심 때문에, 페루는 부패와의 싸움에 공공정책을 집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온 바, OECD 반부패협약에 가입하여 OECD의 기준을 준수하여 관련 법과 규정을 수정하였고, OECD 작업그룹의 권고안에 의하여 초 국가적인 적극적 뇌물 수사와 제재 그리고 위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인 주체의 책임을 개선하여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 따라서 OECD 작업그룹의 권고안의 실행과 함께,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회복 및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 페루건설시장진출가이드북 참고자료 6, 2020.5. 주페루대사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9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3), “TI 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13,” <https://www.transparency.org/gcb2013> (최종방문일: 2021년 7월 14일)

참고문헌

- 미국 법무부, <https://www.justice.gov/opa/press-release/file/919911/download>
- 박윤주 외, “라틴아메리카의 부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전략지역심층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 페루 건설시장 진출 가이드북(2020-2021), 주페루대사관,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 EL PAIS, https://elpais.com/internacional/2020/02/14/actualidad/1581646001_515057.html
- OECD, <https://www.oecd.org/corruption/anti-bribery/OECD-Phase-1-Report-Peru-ENG.pdf>
- OECD, <https://www.oecd.org/corruption/peru-to-join-two-major-oecd-conventions-anti-bribery-convention-and-multilateral-convention-on-mutual-administrative-assistance-in-tax-matters.htm>
- OECD, IMPLEMENTING THE OECD ANTI-BRIBERY CONVENTION Phase 1 Report, 2019.
- Semana Económica(Lima), “Club de la construcción: el presunto cartel de firmas peruanas y extranjeras”, 2017, <https://web.archive.org/web/20190215215637/http://semanaeconomica.com/tema/club-de-la-construccion-el-presunto-cartel-de-firmas-peruanas-y-extranjeras/>
- Transparency International, “TI 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13,” https://www.transparency.org/files/content/publication/2013_WorkingPaper1_Annex_EN.pdf
- UNODC, United Nations Guide on Anti-Corruption Policies, 2003.



맞춤형 법제정보 신청 안내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전략팀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외국 법제 조사 신청을 받아, 조사결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내용 정보

- 주요 국가(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등)법령의 제·개정 내용
 - 국내 현안에 대한 외국 법제 현황 및 내용
 - 정부 입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외국 법령 정보
 - 정부 부처 관련 업무에 대한 법령 정보
- ※ 개인적인 연구(예, 학위논문 작성) 관련 및 단순 법령은 제외되며,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한 범위의 정보제공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www.klri.re.kr)를 통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 → 하단의 수요자 맞춤 서비스 중 “맞춤형 외국법제정보 신청” Click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최신외국법제정보 담당자에게 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메일주소 : foreignlaw@klri.re.kr
※ 신청시, 대상 국가 법령 및 제도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야 합니다.

접수 및 문의



TEL. (044) 861-0471 FAX. (044) 868-1947
E-Mail. foreignlaw@klri.re.kr www.klri.re.kr

배포

- 정기간행물 형식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에 배포 중입니다.
- 신청하시는 경우 ‘최신외국법제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미래혁신과 국민행복을
추구하는 글로벌 입법
연구 플랫폼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일 2021년 8월 31일 | 발행인 김계홍 |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15 한국법제연구원
TEL (044) 861-0300 | FAX (044) 868-9913

